

					처리기간	
					30일 내	
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						
1. 신청인은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.						
2. 신청인은 그 지급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.						
3.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						
접수번호 (의안번호)		- - ()		결정일자		
결정내용		사망자(),행방불명자(),부상자(),생존자(),미수금피해자()				
신청인 ※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	성 명(한자)		()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		
	국외강제동원 희생자·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			유선전화: 휴대전화:		
국외강제동원 희생자·생환 자 또는 미수금피해자	성 명(한자)		()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		
	등록기준지					
구비서류		1.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. 신청인의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				
년 월 일						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
					수수료	
					없 음	